
출 산 육 아 휴 직 보 험 료 할 인 특 약 약관

◆ 목

차 ◆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특약 약관.....	3
제1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부가 대상 및 신청】	3
제2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금액 및 할인 적용】	4
제3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적용 기간】	4
제4조【대상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5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특약 약관

제1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부가 대상 및 신청】

- 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대상계약”이라 합니다)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회사가 업무보고서 상 어린이 보험으로 분류한 상품
 2. “어린이”, “자녀”, “아이”, “베이비” 등 상품명에 어린이와 관련된 단어를 포함한 보장성 상품
- ② 계약자(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계약”의 보험료 할인(이하 “보험료 할인”이라 합니다)을 보험료 납입기간 중 “대상계약” 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하며,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합니다) 기간 중인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 ④ 계약자는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상계약”의 주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연만기 갱신형 상품 주계약의 갱신일까지의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포함)
 2. 이미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

3.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다만, 변경 전 계약자가 변경 후 계약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임용 등)에 따라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				
[계약자가 두 명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경우] 2026년 7월 1일 첫째자녀 출생, 2029년 12월 1일 둘째자녀 출생 가정인 경우				
할인 대상	할인 신청 요건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첫째 자녀 대상계약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둘째 자녀 대상계약	미가입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다만, 대상계약 당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가입한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신청 불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첫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미해당하여 할인신청 가능 , 둘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 신청 불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계약자(또는 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중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 계약 모두 할인 신청 가능				

제2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금액 및 할인 적용】

- ① 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상계약”에 대하여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율(이하 “보험료 할인율”이라 합니다)을 적용하여 드리며, 할인 금액은 “대상계약”의 영업보험료에 “보험료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보험료 할인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보험료 할인”을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제3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적용 기간】

제2조(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금액 및 할인 적용)에 의해 “대상계약”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시점부터 1년(12개월)간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제4조【대상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